

[별표 18]

위임업무 보고사항(제78조제1항관련)

업 무 내 용	보고횟수	보고기일	보 고 자
1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, 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	연 4회	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2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(변경허가) 현황	수시	허가(변경허가) 후 10일 이내	시·도지사
3.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4.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·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
5. 폐수위탁·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	연 1회	다음 해 1월 15일까지	시·도지사
6. 환경기술인의 자격별·업종별 신고 상황	연 1회	다음 해 1월 15일까지	시·도지사
7. 배출업소의 지도·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	연 12회	다음 달 10일까지	시·도지사
8. 배출부과금 부과실적	연 12회	다음 달 10일까지	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
9.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	연 4회	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	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
10.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	수시	사고발생시	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
11. 과징금 부과실적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	시·도지사
12.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	시·도지사
13.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	연 4회	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	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
14. 골프장 맹·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 결과	연 2회	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	시·도지사